

공동주택 경비·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과 경비실 개·보수 및 비품 교체·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존중과 배려 속에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□ 사업개요

- 사업대상: 관내 공동주택단지
- 사업기간: 2026. 1. ~ 2026. 12.
- 사업예산

- 예산 액: 65,000천원(도비 10,500천원, 시비 54,500천원)
 - 휴게시설: 35,000천원(도비 10,500천원, 시비 24,500천원)
 - 경비실: 30,000천원(전액시비)
- 예산과목: 세부사업)공동주택 경비·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
 통계목)민간자본사업보조(자체재원)
 세부사업)경기도 공동주택 경비·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
 통계목)민간자본사업보조(이전재원)

- 지원내용

- 단지 당 최대 20,000천원(자부담 10%이상)
 - 휴게시설: 단지당 최대 10,000천원(경비:5,000천원, 청소:5,000천원)
 - 경비실: 단지당 최대 10,000천원

□ 공모개요

- 공모대상: 광명시 소재 공동주택 (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1항 1호에 따른 공동주택)
- 공모조건
 - 지원금액의 10% 이상 자부담
 - 개선공사 추진 시 가급적 관내 업체 이용
 - 공사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동의
- 지원규모: 65,000천원

■ 공모일정

사업명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공동주택 경비 · 청소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	사업공고 및 현장조사	심의 및 단지선정						사업실행				정산

■ 지원 신청 및 접수방법

- 신청서류: 홈페이지 게시
- 신청방법: 제출서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방문, 우편, 이메일 접수

□ 심사계획

■ 심사 방법

- 1차: 서류심사
- 2차: 현장조사

■ 심사 기준(1차): 노후화 정도(20점), 이용가능 경비청소 노동자 수(20점), 시설개선 비중(20점), 신설 및 지상화 여부(20점),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(20점)

□ 기타 유의사항

-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전 변경 승인 필요

작성자	주택과장 김남숙	공동주택지원팀장 임채옥	담당자 권영준	02-2680-6016
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

주민 공동 이용시설물 개·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 부담 경감 및 지속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통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

□ 사업개요

■ 사업대상: 사용승인 후 13년 경과 공동주택(사업계획승인대상)

■ 사업기간: 2026. 1. ~ 2026. 12.

■ 사업예산

- 예산 액: 740,000천원(도비 12,000, 시비 728,000)
 - 공동주택 관리비지원(의무): 450,000천원(전액시비)
 - 공동주택 관리비지원(비의무): 40,000천원(도비 12,000, 시비 28,000)
 -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지원: 250,000천원(전액시비)
- 예산과목: 세부사업)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통계목)민간자본사업보조(자체재원, 이전재원)

■ 지원내용

- 지원내용: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 개·보수 공사비용 지원 및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지원

□ 공모개요

■ 공모대상: 관내 공동주택 단지

■ 공모조건

- 관리비지원: 사원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 제외한 준공된 지 13년이 경과 한 공동주택
- 자동개폐장치: 사원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 제외한 관내 공동주택

■ 공모일정

사업명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	사업공고 및 단지선정	설계 도서 접수	사업진행 및 보조금 교부									정산 (12.15.한)

■ 지원 신청 및 접수방법

- 신청서류: 홈페이지 게시
- 신청방법: 제출서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방문 및 우편 접수

□ 심사계획

■ 심사 방법

- 1차: 현장조사 및 기능부서 협업(사업비 타당성, 중복지원여부 검토)
- 2차: 심의위원회 개최

■ 심사 기준(1차): 세대수 규모, 노후화 정도, 그간 지원받은 금액, 관리 투명성, 회계관리 등

□ 기타 유의사항

- 해당없음

작성자	주택과장 김남숙	공동주택지원팀장 임채옥	담당자 권영준	02-2680-6016
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

공동주택 노후 승강기의 교체비용 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
□ 사업개요

- 사업대상: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
 - *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 또는 수선
 - * 「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」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준 충족 등을 위한 승강기 전체교체(1순위), 8대 안전부품 설치 단지 우선 지원(2순위) 권장, 단순 부품 교체 지양
- 사업기간: 2026. 1. ~ 2026. 12.
- 사업예산
 - 예산액: 120,000천원(도비 36,000, 시비 84,000)
 - 예산과목: 세부사업)공동주택노후승강기교체비용지원사업 통계목)민간자본사업보조(이전재원)
- 지원내용: 최대 70,000천원 지원
 - * 공동주택관리조례 제7조제3항【별표3】공사규모별·단지별 상한금액 적용

□ 공모개요

- 공모대상: 관내 공동주택 단지
- 공모조건
 -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
- 공모일정

사업명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	사업공고 및 단지선정	설계 도서 접수										정산 (12.15.한)

■ 지원 신청 및 접수방법

- 신청서류: 홈페이지 게시
- 신청방법: 제출서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방문 및 우편 접수

□ 심사계획

■ 심사 방법

- 1차: 현장조사
- 2차: 심의위원회 개최

■ 심사 기준(2차): 세대수 규모, 노후화 정도. 그 간 지원받음 금액, 관리 투명성, 회계관리 등

□ 기타 유의사항

- 해당없음

작성자	주택과장 김남숙	공동주택지원팀장 임채옥	담당자 권영준	02-2680-6016
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

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(30세대 미만)의 공용 및 부대시설 관리를 지원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■ 사업대상 :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(다세대, 연립)

■ 사업기간 : 2026. 1. ~ 12.

■ 사업예산

- 예산 액: 90,000천원(전액 시비)

※ 지원금액: 총 공사월가의 80% 지원(단지당 최대 20,000천원 지원 가능)

- 예산과목: 세부)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통계목)민간자본사업보조(자체재원)

■ 지원내용

- 건물의 외벽, 담장, 석축, 옹벽,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사업

-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사업

- 옥상의 방수,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 보수 사업

- 대지 안의 공지 포장 및 보수 사업

-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(전유부분의 시설은 제외)

-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

-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
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지 · 보수 사업

(필로티 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한 성능 보강 사업)

□ 공모개요

■ 공모대상: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(다세대, 연립주택)의 소유주

■ 공모조건

- 총 공사월가의 20% 및 부가세 자부담

■ 지원규모(예산): 90,000천원

■ 공모일정

사업명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	사업 공고 및 접수	지원대상단지 선정 및 통보										
						공사시행 및 준공 정산 접수						
									보조금 교부	결과 보고		

■ 지원 신청 및 접수방법

- 신청서류: 홈페이지 게시 및 도시재생과 비치
- 신청방법: 방문접수(열린시민청 3층 도시재생과 지역건축안전센터)

□ 심사계획

■ 심사방법

- 1차: 현장 조사 실시 후 총 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위로 예산 범위 내에서 2배수
내로 지원 후보 선발
- 2차: 지원 후보를 대상으로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심사

■ 심사기준

- 1차(정량적 평가): 지원사업 종류(긴급 보수), 노후도, 지원 받은 횟수
- 2차(정성적 평가): 공공이익 증진(시설의 안전성, 주민 편의 증진, 시급성, 적정성)

□ 기타 유의사항

-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전 변경 승인 필요
- 보조금 지원 선정 후 착수 보고 필수(한 달 이내 착공 불이행 시 선정 취소)
※ 천재지변 등 부득이할 경우 신고 후 연장 가능
- 지원 제외 대상
 - 건축물대장 상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소규모 공동주택
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등의 정비사업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
 -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동일한 사업
- ※ 안전점검 결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긴급 보수 필요 사업은 지원 가능

작성자	도시재생과장 최원창	지역건축안전센터	담당자 송선호	02-2680-2904
-----	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